

2018년도 제2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 (2017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)

1 관련근거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(장기요양기관의 관리·평가)
-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(평가위원회)
-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제4조(평가위원회의 운영)

2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등급 결정 및 결과공표 등에 관한 건

☐ 평가등급 결정

-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(최우수), B(우수), C(양호), D(보통), E(미흡) 5개 등급으로 결정한다.
 - A등급 :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70점 이상
 - B등급 :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60점 이상
 - C등급 :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50점 이상
 - D등급 :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 영역 각 40점 이상
 - E등급 :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
- ※ '17년 정기평가 종료 후 휴·폐업 기관도 평가등급 결정

☐ 평가등급 조정

- 평가등급 차하위 조정대상은 아래와 같다.
 - 직전(2014년도)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(2015.6.12.)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.
 - 다만, 노인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최하위등급으로 조정
- 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외 타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

위반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면 평가등급 조정

▶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(행정처분의 기준) [별표2]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시군구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기관
- 기타의 사유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 장기요양기관

○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대상은 아래와 같다.

- 직전(2014년도)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(2015.6.12.)
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
 - 노인학대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
- 거짓자료를 제출한 장기요양기관
- 전산프로그램을 악용해 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장기요양기관
- 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 제공기록 등을 대리 또는
거짓으로 작성한 기관
- 기타 사유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 장기요양기관

□ 평가결과 공표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
현황표에 공개(공통)

- 평가받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 및 평가결과 표기

[예시]

☞ 평가등급 표기 : A(최우수) 2017 정기평가

- 평가결과 표기 : 평가등급, 평가거부, 평가비대상, 신설기관
(‘16.1.1. 이후 지정된 기관) 등

※ 평가비대상(평가불가) : 휴·폐업, 업무정지, 지정취소, 수급자 없음 등
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

※ 최하위 등급 조정사유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기관에 대해서는
대분류 영역별 수준이 홈페이지 및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
조화(표기) 되지 않도록 함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
①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 ★개수 및 환산점수 표시

(예시)

급여종류	구분	기관운영	환경 및 안전	수급자 권리보장	급여제공과정	급여제공결과
방문요양	A(최우수) 2017 정기평가	★★★★☆	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☆	★★★★☆	★★★★★
		83점	100점	84점	77점	95점

- ② 급여종별 대분류 영역별 평균점수
- ③ 급여종별 등급별 점유율 및 평균점수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
- ④ 평가실시기관 명단, 평가비대상(평가불가)기관 명단 및 사유, 평가거부기관 명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

-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표

- ①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★개수 숫자 및 환산점수 표시
(예시)

급여종류	장기요양기관	정원	소재지	연락처	평가등급	기관운영	환경 및 안전	수급자 권리보장	급여제 공과정	급여제 공결과
방문 요양					A(최우수) 2017 정기평가	4 (83점)	5 (100점)	4 (84점)	3.5 (77점)	5 (95점)

※ 평가결과 표기 : 평가등급, 평가거부, 평가비대상

< 참고 :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영역별 수준 별표시(★, ☆) 산정방법 >

- 대분류 영역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40점부터 50점 미만까지는 0.5(★)개 부여, 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0.5(★)개 단위로 부여, 40점 미만은 공란으로 표시

구분	40점이상 ~ 50점미만	50점이상 ~ 55점미만	55점이상 ~ 60점미만	60점이상 ~ 65점미만	65점이상 ~ 70점미만
개수	0.5	1	1.5	2	2.5
표시	☆☆☆☆☆	★☆☆☆☆	★★☆☆☆	★★★☆☆	★★★★☆
구분	70점이상 ~ 75점미만	75점이상 ~ 80점미만	80점이상 ~ 85점미만	85점이상 ~ 90점미만	90점이상
개수	3	3.5	4	4.5	5
표시	★★★★☆	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★	★★★★★

-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관할 시·군·구에 평가결과통보서 통보
 - 시·군·구 관할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각 기관의 평가점수, 대분류 영역별 점수
 - 평가결과 인력기준·시설기준이 미흡인 기관인 경우 미흡 표기
 - ※ (인력·시설 기준)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해당
 - 평가비대상(평가불가)기관 명단 및 평가거부기관 명단 통보
-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평가결과통보서 통보
 - 평가등급, 평가총점, 대분류영역별 점수, 전체평균점수 표기
- 홈페이지 및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제공용 현황표에 대분류영역별 수준의 환산점수 공개는 2016년 및 2017년 정기평가, 2017년 수시평가부터 적용

3 2017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 등에 관한 건

□ 가산 지급

- 가산지급은 평가 전년도(2016년도)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일부(일정비율)를 가산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
 - 급여종류별 상위 100분의 10범위에 속하면서 최고등급(A)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
 - ※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
 - 급여종류별 상위 100분의 10 초과 20 이하 범위에 속하면서 최고등급(A)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
 - ※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하여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0.5
- 동점기관은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[별표1]의 대분류 영역별 환산점수(배점비중)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.
- 가산금을 받는 기관은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, 공단은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한다.
 - ※ 2014년 제2차 평가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('14.3.28)

□ 가산 지급제외

- 직전(2014년도) 정기평가 결과에 의한 가산 지급일(2015.6.12.)부터 당해 정기평가 결과 가산 지급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아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가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2016.1.1.(지표적용일)부터 가산지급일 사이에 휴·폐업 기관 또는 적용 종료된 기관
 - 평가등급 하향(차하위 또는 최하위) 조정사유가 발생한 기관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시군구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기관
 -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,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된 기관은 행정처분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가산지급을 거부하고, 추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
- 기타 사유로 가산이 부적절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기관